

## 연천군의회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연천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1.13.)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2조의2)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2조의3)

#### 4. 개정규칙안: 붙임

####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2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e-메일(nihilvideo@korea.kr)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사유

라. 제출기관: 연천군의회(의사팀)

- 주소: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전화: 031-839-2507, 팩스: 031-839-2509

##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입법예고”를 “조례안 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안예고”를 “조례안 예고”로,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의 예에 따른다.”를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9장에 제102조의2, 제102조의3, 10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정당의 당원이나 의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2조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2조4(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발의 의원	연천군의회 의원 임재석 외 6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조례안 예고) ① (생략)</p> <p>② <u>입법예고</u>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p> <p>③ <u>조례안예고</u>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u>」에 따른 입법예고의 예에 따른다.</p> <p>&lt;신 설&gt;</p>	<p>제24조(조례안 예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조례안 예고</u> ----- ----- --.</p> <p>③ <u>조례안 예고</u>----- ----- 「<u>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u>」를 준용한다.</p> <p>제10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정당의 당원이나 의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p>

<신 설>

③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2조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

<p>&lt;신 설&gt;</p>	<p>정을 한 경우</p> <p>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p> <p>③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2조의4(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p>
--------------------	---